

大田直轄市私立學校教育費財産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查 經 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 疑 與 答 辯 要 旨 4
5. 討 論 要 旨 4
6. 審 查 結 果 4

大田直轄市私立學校教育費財産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教育法에 의하여 各級學敎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이 取得하여 工業系統 學校의 車輛·重機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使用되는 것과 航空系統學校의 비행연습·기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실습에 使用되는 航空機 및 農業系統學校의 실험·실습용 立木·車輛등 私立學校가 學生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使用하는 教育用財産에 대하여
- 學校法人의 健全育成을 支援하고자 地方稅法 第 7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其間동안 課稅免除 하고져 함.

나. 主要骨子

- 課稅免除 對象
學校法人의 私立學校가 學生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車輛, 重機, 立木, 航空機
- 課稅免除 稅目 : 取得稅, 登錄稅
- 條例의 適用時限 : 1994年 12月 31日 까지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案鍾贊)

本 制定條例案은 學校法人의 健全한 育成을 위하여 私立學校가 學生들의 實驗·實習等 教育用에 直接 使用하는 財產에 對한 課稅 免除를 위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1.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첫째 : 學校法人이 私立學校 學生들의 實驗·實習等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境遇에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코저 하는 事案으로서 課稅 免除 對象은 車輛과 重機에 있어서는 器機의 製作, 組立, 運轉등 實驗·實習用에 使用되는 것이고, 航空機는 飛行練習, 器機의 製作, 組立 等 實驗 實習用에 使用되는 것이며 立木은 造林, 樹種, 更新등 林學系統의 實驗·實習用에 使用되는 것을 課稅免除 對象으로 하는 事案이며 (第 2條)

둘째 : 課稅免除 申請은 課稅免除를 받고자 하는자가 區廳長에게 直接 申請하며, 申請이 없는 경우라도 區廳長이 課稅免除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職權으로 免除할 수 있도록 하는 事案이고 (第 4條)

세째 :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31日까지 適用토록하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本 案은 管內 私立學校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고자 새로이 條例를 制定하는 事案으로써 教育法 第 82條 第 1項의 立法 趣旨를 最大限 尊重하고 地方稅法 第 7條 第 1項의 規定에 依據 一定期間 課稅免除 하므로써 地域內 實業系 高校 運營을 內實化함은 물론 教育自治에 寄 與할 것으로 期待되어 肯定的인 檢討가 要望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私立學校 教育用 財産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 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 가. 教育法에 의하여 各級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이 取得하여 工業系統 學校의 車輛, 重機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使用되는 것과 航空系統學校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등의 실험·실습에 使用되는 航空機 및 農業系統學校의 실험·실습용 立本·車輛등 私立學校가 學生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使用하는 教育用 財産에 대하여
- 나. 學校法人의 健全育成을 支援하고자 地方稅法 第7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期間동안 課稅免除 하고져 함.

2. 主 要 骨 子

- 가. 課稅免除 對象
學校法人의 私立學校가 學生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使用하고 있는 車輛, 重機, 立木, 航空機
- 나. 課稅免除 稅目 : 取得稅, 登錄稅
- 다. 條例의 適用時限 : 1994年 12月 31日 까지

3. 參考事項

- 教育法
 - 第 82條 (設立者) ①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를 設立·經營한다
 - ② 法人 또는 私人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校를 設立·經營할 수 있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制定許可 : '91 . 11. 21 .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 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하여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재산을 당해 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차량·중기 : 기기의 제작·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2. 항공기 :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3. 입 목 : 조립·수종갱신등 입학계통의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